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5월 2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6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구)대관령상행휴게소에 부설 설치된 휴게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주차장 이용료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주차장법」의 준용에 대해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구)대관령상행휴게소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취지가 있습니다.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 이용료를 별표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료 감면에 대한 사안으로

긴급자동차 전액 면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 시 50%감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관령휴게소” 관리 운영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평창군수에게 사무 위임 된 것으로

2018년 1월 “강원도·평창군 사무위임 협약”이 체결 된 바 있으며, 해당 사무위임 재산은 대관령휴게소 및 주차장 부지입니다.

또한, 해당시설은 지난 4월 출범한 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대행하는 시설입니다.

○ 주요내용인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한 주차장 이용료는

강원도 내 인근 시·군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이용료를 비교해 보았으니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단위 : 원)

이용시간별	자동차 종류별 1구획 당 이용료		
	경형, 친환경	소형	대형
기본 이용료 (30분 이내)	300원	600원	1,200원
매 10분 마다 (30분 초과 5시간 이하)	100원	200원	400원
1일 주차 (5시간 이상)	3,000원	6,000원	12,000원
장기 주차 (8일 이상 1월 이내)	24,000원	48,000원	96,000원

※ 강원도 내 시·군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용료 비교 (단위 : 원)

	기본 이용료(30분이내)		매10분 마다(30분 초과)	1일 주차
	강릉시	1급지	500	200
2급지		300	100	3,600
원주시 (일반공영)	1급지	600	300	6,000
	2급지	300	100	3,600
춘천시	600		300	
동해시	600		200	6,000
	300(경차)		100(경차)	3,000(경차)
영월군	1급지	200(10분 마다)		8,000
	2급지	100(10분 마다)		4,000
정선군	500(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 마다)		300(2시간초과시 1구획당10분마다)	6,000
평창군	1급지	대형차량	700(30분 마다)	6,000
		소형차량	500(30분 마다)	4,000
	2급지	대형차량	500(30분 마다)	4,000
		소형차량	300(30분 마다)	2,500

○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위임된 사무를 「주차장법」 제14조 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에 따른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안 제4조(이용료 감면)에 제3항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를 추가
- 안 제5조(준용)는 제6조로 변경하며
안 제5조에 주차장 이용 제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
제5조(주차장 이용 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2.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카라반, 캠핑카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숙박을 위한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
- [별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표에서 장기주차 항목을 삭제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1부.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관령휴게소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령휴게소”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111, 14-293, 14-304, 672-1번지에 위치한 휴게소((구)대관령상행휴게소)를 말한다.
2.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란 이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이용료)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2.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

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5조(주차장 이용 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2.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카라반, 캠핑카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숙박을 위한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준용) 주차장 이용료 징수 등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주차장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제3조 관련)

이용시간별	자동차 종류별 1구획 당 이용료		
	경형, 친환경	소형	대형
기본 이용료 (30분 이내)	300원	600원	1,200원
매 10분 마다 (30분 초과 5시간 이하)	100원	200원	400원
1일 주차 (5시간 이상)	3,000원	6,000원	12,000원

비 고

- 이용시간은 매 10분단위로 적용하되, 최종단위시간 5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 10분 이내에 회차하는 차량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 주차하는 구획수가 1구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하는 구획 수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다.
- 이륜자동차의 경우 경형으로 적용하되, 2대 이상을 1구획 안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1구획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 자동차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경형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가 3.6미터 이하인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 친환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소형 : 경형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2톤 이하 화물자동차
 - 대형 :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2톤 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경형 제외)는 차량 1대당 점용하는 구획 수에 따라 적용